|  |  |  |
| --- | --- | --- |
| **국무원 판공청****무역정책의 준법성을 진일보** **강화할 것에 관한 통지**국판발〔2014〕29호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및 직속기구 :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새로운 개방형 경제 체제구축을 가속화 하며, 세계 무역체제의 규칙을 확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하에 무역정책의 준법성을 진일보 강화할 것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1. 본 통지에서 무역정책이라 함은 국무원 각 부처, 지방 각 급 인민정부와 그 산하 부서에서 제정한 화물·서비스무역 및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관련 있거나 또는 화물·서비스무역 및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장, 규범성 문건과 기타 정책조치를 지칭하며, 특정의 행정관리 대상을 상대로 실시하는 구체행정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 본 통지에서 준법성이라 함은 상기 무역정책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그 첨부와 후속협정, <중화인민공화국가맹협정서>, <중국가맹업무팀보고서>에 부함됨을 지칭한다.3.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이 국무원 각 부처, 지방 각 급 인민정부와 그 산하 부서에서 제정한 무역정책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의견은 상무부가 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국무원 각 부처에서 제정한 무역정책은 상무부 관련 부서에서 그 준법성을 검토 한 후 검토의견서 부본을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제출하고 과련 부서가 후속 업무를 처리한다.(2) 지방 인민정부와 그 산하 부서에서 제정한 무역정책은 상무부 관련 부서에서 그 준법성을 검토 한 후 검토의견을 해당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 고지하고 검토의견서 부본을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제출하며 해당 지방 인민정부가 후속 업무를 처리한다. 4. 국무원 각 부처는 무역정책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준법성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식 반포하는 동시에 정책문 부본을 상무부(중국 정부 세계무역기구 통보자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각 부처에서 제정한 무역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정책 제정 부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주관부서에제출하여 심사를 받거나 정식 반포하기 전 정책의 준법성에 대한 상무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 국제경제무역조약·협정과의 연결성과 관련된 경우;(2)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상무부는 의견수렴안 접수일 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내에 정책의 준법성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상기 절차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조속히 출범하며 상무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를 주관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구체 업무를 책임지도록 한다.5. 상무부는 본 통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구체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6. 각 지역과 부서는 무역정책 준법성 강화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제무역규칙 준수 의식을 강화하며 본 통지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시행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제무역규칙 교육을 강화한다.첨부 :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조치국무원 판공청2014년 6월 9일첨부**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조치**1.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조치(1) 세관절차, 가격평가 및 원산지 규칙(2) 관세(3)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세(4) 수입 금지령 및 수입 허가(5) 국영무역(6) 무역구제(7) 표준 및 기타 기술요구사항(8) 수입과 연관된 융자정책2.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조치(9) 수출세(10) 수출환급세(11) 가공무역 세금 양허(12) 수출 금지, 수출 제한 및 수출 허가(13) 국영무역(14) 수출과 연관된 융자, 보험 및 담보 정책(15) 수출 활성화 조치 및 수출마케팅 지원 조치3. 대외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책조치(16) 조세우대정책(17) 보조금 및 기타 정부지원(18) 무역과 연관된 산업 정책(19) 가격 통제(20) 경쟁정책 및 소비자 보호 정책(21) 무역과 연관된 지적재산권 정책(22) 무역과 연관된 투자 정책(23) 서비스무역 시장 진입 관련 정책(24) 서비스무역 내국민 대우 관련 정책(25)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책 |  | **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加强贸易政策合规工作的通知**国办发〔2014〕29号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为贯彻落实党的十八届三中全会精神，加快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坚持世界贸易体制规则，经国务院批准，现就进一步加强贸易政策合规工作通知如下：　　一、本通知所称贸易政策，是指国务院各部门、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部门制定的有关或影响货物贸易、服务贸易以及与贸易有关的知识产权的规章、规范性文件和其他政策措施，不包括针对特定的行政管理对象实施的具体行政行为。　　二、本通知所称合规，是指上述贸易政策应当符合《世界贸易组织协定》及其附件和后续协定、《中华人民共和国加入议定书》和《中国加入工作组报告书》。　　三、商务部负责接收世界贸易组织成员对国务院各部门、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部门制定的贸易政策提出的书面意见，并组织做好以下工作：　　（一）涉及国务院有关部门制定的贸易政策，由商务部商有关部门研究提出合规性书面意见，抄送国务院法制办公室，有关部门做好相关后续工作。　　（二）涉及地方人民政府及其部门制定的贸易政策，由商务部商有关部门提出合规性书面意见，并告知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抄送国务院法制办公室，有关地方人民政府做好相关后续工作。　　四、国务院各部门应在拟定贸易政策的过程中进行合规性评估，并在正式发布时将政策文本抄送商务部（中国政府世界贸易组织通报咨询局）。　　国务院各部门拟定的贸易政策，有下列情形之一的，如政策制定部门认为有必要，应在按有关程序报送审查或自行发布之前就是否合规征求商务部的意见：　　（一）涉及与《世界贸易组织协定》等国际经贸条约、协定之间衔接的；　　（二）可能对贸易产生重要影响的。　　商务部应在收到征求意见稿之日起7个工作日内，对政策措施提出书面意见，特殊情况可适当延长。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参照上述程序组织开展本地区的相关工作，抓紧制定具体措施，并指定商务主管部门或有关机构具体负责。　　五、商务部可就落实本通知要求会同有关部门制定具体办法。　　六、各地区、各部门要高度重视贸易政策合规工作，不断提高国际贸易规则意识，认真落实本通知各项要求，加大干部国际贸易规则培训力度。　　附件：可能影响贸易的政策措施　　　　　　　国务院办公厅2014年6月9日附件**可能影响贸易的政策措施**　　一、直接影响进口的政策措施　　1.海关程序、估价和原产地规则　　2.关税　　3.影响进口的间接税　　4.进口禁令和许可　　5.国营贸易　　6.贸易救济　　7.标准和其他技术要求8.与进口有关的融资政策　　二、直接影响出口的政策措施　　9.出口税　　10.出口退税　　11.加工贸易税收减让　　12.出口禁止、限制和许可　　13.国营贸易　　14.与出口有关的融资、保险和担保政策15.促进和营销支持措施　　三、其他影响贸易的政策措施　　16.税收优惠政策　　17.补贴和其他政府支持　　18.涉及贸易的产业政策　　19.价格管制　　20.竞争政策和消费者保护政策　　21.与贸易有关的知识产权政策　　22.与贸易有关的投资政策　　23.与服务部门市场准入有关的政策　　24.与服务部门国民待遇有关的政策　　25.其他影响贸易的政策 |